

*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조정

석유사업법 제 15조(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)의 규정 및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4-13호('94. 2. 15)에 의하여 1994년 4월 15일 0시부터 국내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을 별첨과 같이 조정, 공고합니다.

1994. 4. 15
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회장

#별첨

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

1. 세전제조장 반출가격

(단위 : 원/ℓ, LPG는 원/kg)

	중전 가격	조정 가격	조정율 (%)
무연휘발유	175.86	173.67	-1.25
등유	167.34	164.92	-1.45
저유황경유(0.2W%)	137.46	136.00	-1.06
경유(1.0W%)	131.64	130.18	-1.11
저유황경질중유(1.0W%)	116.79	115.38	-1.21
저유황경질중유(1.6W%)	114.42	113.04	-1.21
경질중유(2.0W%)	110.51	109.18	-1.20
저유황중유(1.0W%)	96.19	95.03	-1.21
저유황중유(1.6W%)	92.27	91.16	-1.20

증 유 (3.0W%)	83.21	82.21	-1.20
저유황B-C유 (1.0W%)	80.74	79.77	-1.20
저유황B-C유 (1.6W%)	75.15	74.25	-1.20
B-C유 (4.0W%)	59.81	59.09	-1.20
프로판(일반용)	190.66	190.66	0.00
프로판(도시가스용)	153.63	153.63	0.00
부탄(일반용)	190.18	190.18	0.00

2. 대리점 및 주유소의 최고판매가격

가. 대리점의 최고판매가격

(단위 : 원/ℓ, LPG는 원/kg)

	세포함제조장 반출가격	대 리 점		참 고	
		수수료	판매가격	종전가격	조정율 (%)
무연휘발유	554.00	23.00	577.00	584.00	-1.20
등 유	205.00	14.00	219.00	222.00	-1.35
저유황경유 (0.2W%)	187.00	13.00	200.00	202.00	-0.99
경 유 (1.0W%)	179.00	13.00	192.00	194.00	-1.03
저유황경질중유 (1.0W%)	126.92	8.91	135.83	137.38	-1.13
저유황경질중유 (1.6W%)	124.34	8.91	133.25	134.77	-1.13
경 질 중 유 (2.0W%)	120.10	8.91	129.01	130.47	-1.12
저 유 황 중 유 (1.0W%)	104.53	9.10	113.63	114.91	-1.11
저 유 황 중 유 (1.6W%)	100.28	9.10	109.38	110.60	-1.10
증 유 (3.0W%)	90.43	9.10	99.53	100.63	-1.09
저유황B-C유 (1.0W%)	87.75	9.80	97.55	98.61	-1.07
저유황B-C유 (1.6W%)	81.68	9.80	91.48	92.47	-1.07
B-C유 (4.0W%)	65.00	8.80	73.80	74.59	-1.06
프로판(일반용)	230.70	95.83	326.53	326.53	0.00
프로판(도시가스용)	185.89				
부탄(일반용)	230.12	73.88	304.00	304.00	0.00

나. 주유소의 최고판매가격

(단위 : 원/ℓ, LPG는 원/kg)

	대 리 점 판 매 가 격	주 유 소		참 고	
		수수료	판매가격	종전가격	조정율 (%)
무연휘발유	577.00	37.00	614.00	621.00	-1.13
등 유	219.00	20.00	239.00	242.00	-1.24
저유황경유 (0.2W%)	200.00	18.00	218.00	220.00	-0.91
경 유 (1.0W%)	192.00	18.00	210.00	212.00	-0.94
프로판(일반용)	326.53	148.47	475.00	475.00	0.00

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출입추천요령

통합공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추천 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94년 3월 15일
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회장

제1조 (추천대상품목) 통합공고 별표1, 별표 II 품목
별 수출·수입요령상 해당품목으로 한다.

제2조 (추천대상자)

가. 원유의 수입 및 계약승인대상인 석유류제
품의 수출입은 석유사업법 제11조의 규정
에 의하여 석유수출입 신고를 한 자로서
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
장관으로부터 계약승인을 받은 자

나. 계약승인대상이 아닌 석유류제품의 수출입
은 석유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
유수출입 신고를 한 자

제3조 (심사사항)

협회장은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출입추천신
청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.

가.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입

1. 수입품목, 규격, 수입수량, 수입가격, 수

입지역 기타 수입조건

2. 수입되는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
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중 석유제품이
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지의 여부
(50% 이상)

3. NGL (Natural Gas Liquid, Light)의 수
입은 국내 나프타 생산분의 공급부족시
부족물량 이내로 하고, 나프타 대체연료
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은 별표1과
같다.

나. 석유류제품의 수출

1. 수출품목, 규격, 수량, 단가, 수출지역
및 기타 수출계약승인서상의 수출조건

2. 상공자원부의 수출계약승인대상 석유제
품이 아닌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국내
석유제품수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

수출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조 (구비서류)

가.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입

1. 수입추천신청서 3부
2. 물품매도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
3. 수입승인신청서 5부
4. 상공자원부의 원유구입계약승인서 1부 (원유의 수입에 한함)
5. 수입사유 및 용도설명서 1부(석유류제품의 수입에 한함.)
6. 연간 석유류제품 수입계획 및 수급계획표 1부(석유류제품의 수입에 한함)

나. 석유류제품의 수출

1. 수출추천신청서 3부
2.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
3. 수출승인신청서 4부
4. 수출사유서 1부
5. 수출대행계약서(수출대행시에 한함) 1부
6. 연간 석유류제품 수출계획 및 수급계획표 1부

제5조 (재발행) 기 추천서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, 수출입추천서의 재발행 신청시에는 당초 추천서와 재발행 사유에 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

한다.

제6조 (처리기간) 추천서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로 한다.

제7조 (사후관리)

- 가. 협회장은 수출입추천을 받은자가 상공자원부의 수출입 계약승인조건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- 나. 협회장은 이를 위하여 수입추천을 받은자에게 제품생산실적, 원료사용실적, 부산물 판매실적, 수입면장 사본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자재와 제품의 반출입 기장서류 및 재고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 (보고)

- 가. 협회장은 월별 수출입추천 실적을 상공자원부 소정양식에 의거, 매 익월 5일까지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
- 나. 협회장은 매분기 완료후 7일이내에 한국무역대리점 협회에 수입추천사항을 통보한다.

- 부 칙 -

제1조 (시행일) 본 요령은 199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♣

별표 1

NGL (light)의 규격

항 목	규 격	시험 방법
◦ Color, Saybolt Distillation	+ 20 minimum	ASTM D - 156 ASTM D - 86
-50% Evaporated (°F)	115 minimum 180 maximum	
-90% Evaporated (°F)	260 maximum	
◦ Gravity (API)	70-88	ASTM D - 287
◦ Reid Vapor Pressure (Lbs)	12.5 Maximum	ASTM D - 323

주) 1) 저장상태 (온도)에서 순 증기압은 RVP와 관계없이 14Psia 이하임.